

부산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가단3255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

2. B

3. 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1. 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이 2017. 6. 9. D와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D에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17. 6. 13. 접수 제1258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판사 금덕희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소외 D은 국세채납자이고, 피고들은 D의 자녀입니다(갑 제 호중 가족관계증명서).

2.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의 소외인(D)에 대한 조세채권의 내역

) D은 2016. 3. 2. 경상남도 거제시 E 및 2016.3.17. 경상남도 거제시 F 답 966 를 6천만 원, 2016. 3. 17. 경상남도 거제시 G 답 1,365 , H 답 1,567 , I 답 665 , J 답 122 , K 답 1,104 , L 답 486 , M 344 를 270,000,000원에 각 매도하였습니다.

D이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동래세무서장은 2018. 9. 8. D에게 2018. 9. 30.까지 양도소득세 89,637,650원(가산세포함)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2) 현재 D은 아래 【표1】 과 같이 가산금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합계 97,536,73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 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

표 1 D의 국세채납액(202 년 6월 기준)

단위(원)

세목	귀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채납액 (가산금포함)	납세의무 성립일
양도소득세	2016	2018. 9. 7.	2018. 9. 30.	89,637,654	97,536,730	2016. 5. 31.

나. 소외 D의 부동산 증여행위

소외 D은 2017. 6. 9. 피고들과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동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갑 제4호증 동기사항전부증명서).

3.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

위 【표1】과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2017. 6. 9.)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입니다.

4.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관련법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마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

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7. 6. 9. 당시 D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2】와 같습니다(갑 제5호 증 제납자재산현황). D은 당시 재산적 가치가 가장 컸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여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표2】 이 사건 증여계약일(20 7. 6. 9.) 당시 D의 재산 내역

순번	항목	금액(원)	비고
적극재산			
	예금채권(N은행)	,000	갑 제6호증 이자배당 소득 내역
2	예금채권(O조합)	7,000	
3	증권사금융채권(P)	2,333	

4	경남 거제시 Q R	6,982,370	갑 제7호증 캠프 배분계산서
5	경남 거제시 S	26, 87,000	갑 제8호증 캠프 약식감정실익분석표
6	별지 기재 부동산	62,43 ,850	갑 제9호증 증여세결정결의서
합계		05,73 ,553	
소극재산			
	조세채무	8 ,292,784	
합계		8 ,292,784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합계		24,438,769	

다. 소결

위와 같이 D은 2017. 6.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6. 13.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체납징세과에서 D의 국세 체납에 관하여 재산 분석 및 추적 조사를 실시하던 중인 2021. 5. 18.경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한 후에야 비로소 D이 피고들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 원상회복 청구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은 소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오니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상남도 통영시 T 전 1,233
2. 경상남도 통영시 U 전 774
3. 경상남도 통영시 V 임야 212
4. 경상남도 통영시 W 전 173
5. 경상남도 통영시 X 임야 419
6. 경상남도 통영시 Y 전 555
7. 경상남도 통영시 Z 임야 483
8. 경상남도 통영시 AA 전 453
9. 경상남도 통영시 AB 전 2,476

